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5 선고 2019가단5208871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람

담당변호사 양석표

피고1. B

2. C

변론 종결 2020. 3. 13. (피고 1.에 대하여)

2021. 1. 15. (피고 2.에 대하여)

판결 선고 2021. 2. 5.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47,653,231원 및 그 중 140,000,000원에 대하여 2019. 7. 1. 부터 2019. 9. 17.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2. 15. 체결된 증여계약을 133,001,720원의 범위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C는 원고에게 133,001,7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1.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12. 15. 체결된 증여계약을 135,000,000원의 범위에서 취소한다.
2. 피고 C는 원고에게 1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에 대한 대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부동산 증여

피고 B은 2017. 12. 15. 아들인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고 같은 달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가시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원고로부터 대출받은 140,000,000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C에게 증여하였는바, 그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B과 피고 C 사이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C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서 13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 B에 대하여 : 자백

나. 피고 C에 대하여

(1) 사해행위의 성립 민법 제406조에서 정하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그리고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갑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A, D 주식회사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사해행위 무렵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 및 인천 서구 E건물 F호가 있고,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무 140,000,000원 외에도 위 E건물 F호에 설정된 G에 대한 근저당권부채무 154,000,000원과 주식회사 A에 대한 근저당권부채무 55,760,000원, D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124,801,746원이 있는 사실, 감정인 H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I 임야에 관한 피고 B의 지분 가액은 6,575,540원, J 임야는 149,914,920원, 위 E건물 F호는 129,535,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 B은 채무초과라 할 것이고, 채무초과상태인 피고 B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C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키는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는 추정된다.

(2) 원상회복 갑 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는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2018. 1. 25. K조합에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가액배상을 명하기로 한다.

다만, 채무자가 사해행위로서 양도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 그 부동산 중에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이므로, 사해행위가 취소되는 경우 배상하여야 할 가액은 사해행위 취소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J임야에 관하여 L 주식회사가 2016. 11. 29. 채무자

피고 B, 채권최고액 56,4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0. 8. 11.경 J 임야의 시가는 181,443,320원, I 임야의 시가는 7,958,4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배상하여야 할 가액은 133,001,720원 $[(181,443,320\text{원}+7,958,400\text{원})-56,400,000\text{원}]$ 이 된다. 따라서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133,001,720원의 범위에서 취소하고, 피고 C는 가액배상으로서 원고에게 위 133,001,7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C가 실질적 소유자로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증여받았더라도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신현석

별지